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22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27,
FAX 042-600-5039, E-mail : kimcs46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 ----- ----- ----- -----</p>
<p>제2조(설치 및 기능)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 계획 2. 응급의료계획의 변경 3. 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p>제2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업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5] [법률 제11024호, 2011.8.4, 타법개정]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에 관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8.5]